

제공일자	2014. 9. 29(월)	담당자	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13	총2매

제목 : 보험연구원, 『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』 정책세미나 개최 “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”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“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안전망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”을 주장
- 이에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- 또한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투자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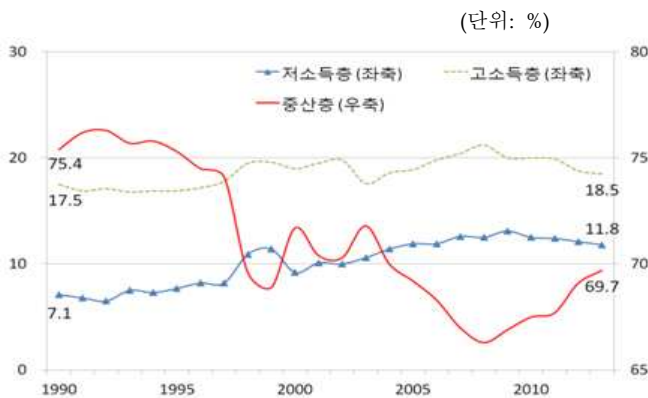
- 보험연구원은 9월 30일(화) 김영주 의원실, 김용태 의원실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관 제3회의실에서 “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”이란 주제로 국회 연금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.
-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이들의 사적안전망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들의 노후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음.
 -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.

- 주제발표 이후 이봉주 교수(경희대)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관련부처, 복지,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소득계층의 사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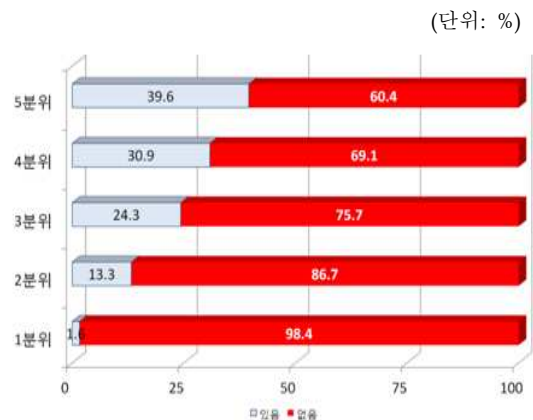
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·사 협력 필요

-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저소득계층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공·사협력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요구됨.

소득계층별 비중추이



소득분위별 사적연금보유비중



- 저소득계층은 1990년 7.1%에서 2013년 11.8%로 확대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인 소득 1, 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.5%, 13.3%에 불과
- 특히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(2014년 6월 기준)은 11.1%, 2,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(세제적격)은 1.2%로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함.
- 반면,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사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.
- 예를 들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보조해 주거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.

□ 이런 점에서 볼 때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중심의 제도개선이 요구됨.

① 먼저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.

○ 국민연금을 가입한 저소득계층(예: 소득 2분위)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가정시, 소득 2분위의 31.2%가 소득 3분위로 상향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지원 효과가 큼.

② 또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(현재: 3년)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* 보완이 필요함.

*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: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도입시, 퇴직연금적립금 및 운용수수료의 일부분을 한시(3년)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제도임(2015년 7월 도입예정).

③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녀 교육비 재원 마련을 위한 교육 IRA제도 도입이 요구됨.

④ 한편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가기여제도(catch up plan) 도입을 검토할 필요

⑤ 더불어 투자지식이 부족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투자교육(가입자 교육)을 보다 강화하고 연금수급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.

⑥ 또한 저소득계층에 부합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종신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

□ 강호 보험연구원장도 이날 환영사를 통해 “공·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”며 “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”고 강조하였음.

<별첨>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